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5447 제안연월일 : 2024. 11.

제 안 자: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| 의안명 | 대표 발의자 (제출자) | 발의일 (제출일) | 경 과 |
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0713호) | 김승수의원 | 2024. 6. 20. | 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7차 전 체회의(2024. 8. 26.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|
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3240호) | 김남희의원 | 2024. 8. 27. |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전 체회의(2024. 9. 24.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|
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3253호) | 박용갑의원 | 2024. 8. 27. |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전 체회의(2024. 9. 24.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|
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| 우재준의원 | 2024. 8. 28. |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전 체회의(2024. 9. 24.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|

|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3275호) | | | 거쳐 소위원회 회부 |
|---|-------|--------------|--|
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김장겸의원 | 2024. 8. 29. |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전 체회의(2024. 9. 24.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|
| (제2203323호)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| | |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전 |
|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3335호) | 이수진의원 | 2024. 8. 29. | 체회의(2024. 9. 24.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|
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3479호) | 김용민의원 | 2024. 9. 2. |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전 체회의(2024. 9. 24.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|
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3542호) | 박충권의원 | 2024. 9. 2. |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전 체회의(2024. 9. 24.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|
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3592호) | 김현정의원 | 2024. 9. 3. |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전 체회의(2024. 9. 24.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|
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| 조인철의원 | 2024. 9. 4. |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전 체회의(2024. 9. 24.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|

| 관한 법률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부개정법률안 | | | 거쳐 소위원회 회부 |
| (제2203627호) | | | |
| 정보통신망 | | | |
| 이용촉진 및 | | | 「국회법」제58조제4항에 따라 |
| 정보보호 등에 | 화고 이 이 이 | 2024. 9. 23. | |
| 관한 법률 | 황정아의원 | 2024. 9. 23. | 소위원회 직접 회부(2024. 26.) |
| 일부개정법률안 | | | 20.) |
| (제2204158호) | | | |

- 가.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(2024.
 - 9. 30.)에서 위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- 나.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4. 9. 3 0.)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·의결한 11건의 법률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음.

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,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·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.

그럼에도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안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성범죄, 명예훼손, 사기 등의 피해 실태 파악, 합성영상등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,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, 교육·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,

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 드라인의 개선·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,

「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·복제물과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·확산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제4조의2 신설 등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(이하 이 조에서 "합성영상등"이라 한다)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,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
- 2.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
- 3.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
- 4.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
- 5.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·홍 보

6.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제44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·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44조의7제3항제1호 중 "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"를 "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·편집물 ·합성물·가공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과 「아동 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성 착취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<u> </u> | 4구시0/됩니어지도 스크 - 시크 |
|----------|---|
| | 4조의2(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・신체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・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・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(이하이 조에서 "합성영상등"이라한다)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, 명예훼손 또는 사기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. 1.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2.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약 3.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|

제44조의4(자율규제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③ (생 략)

- 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·② (생 략)
 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 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

- 4.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
- 5.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 육·홍보
- 6.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- 제44조의4(자율규제) ①·② (현 행과 같음)
 -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·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.
 - 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- 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| 3 | | | |
|---|------|------|--|
| | | | |
| | | | |

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
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[제1항제9호의 정보 중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]이 있었을 것

2. · 3. (생략)

④·⑤ (생 략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